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43
----------	------

2022년 4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2년 3월 10일
- 다. 회부일 : 2022년 3월 16일
- 라. 상정일 :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3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6. 30.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최초 위기개입 상담서비스에서부터 자립·자활까지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거리상담 등 청소년일시쉼터사업
  -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대안교육 사업
  -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활동 등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
  -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델 정립사업

###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시설규모 : 대지 22,650㎡, 건물면적 6,462㎡(지하1층, 지상4-5층)
- 주요시설 : 상담실, 집단상담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청소년일시  
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룸학교, 꿈에학교 등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2. 7. 1. ~ 2025. 6. 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72백만원('22년) ※ 민간위탁사업비 606백만원 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1,717백만원, 운영비 563백만원, 사업비 292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 내역

-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3142	강동 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li> <li>- 개관일자 : 2012. 10. 01.</li> <li>- 시설규모 : 부지면적 1,983㎡/ 건물 5,125.88㎡</li> <li>-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li> <li>-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2,176백만원(2022년)</li> </ul>
3143	청소년 드림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삼성동 171-1)</li> <li>- 개관일자 : 2012년 10월 1일</li> <li>- 시설규모 : 부지 22,650㎡, 건물 6,462㎡(1·4·5층)</li> <li>-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li> <li>-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2,572백만원(2022년)</li> </ul>
3144	은평청소년 증장기습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불광동) 동산홈타운</li> <li>- 개관일자 : 2017.12.12.</li> <li>- 시설규모 : (대지) 143.99㎡, (연면적) 214.64㎡</li> <li>- 이용대상 :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여자청소년</li> <li>-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li> <li>-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347백만원(2022년)</li> </ul>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3145	망우청소년 단기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중랑구 송림길 156</li> <li>- 시설규모 :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전용면적) 241.56㎡</li> <li>- 개소일자 : 2015.01.01.</li> <li>- 이용대상 : 9~24세 가정 밖 청소년(여성)</li> <li>-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li> <li>-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li> <li>- 소요예산 : 624백만원(2022년)</li> </ul>
3146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li> <li>- 시설규모 : (대지) 212.2㎡, (연면적) 333.37㎡, (전용면적) 106.86㎡</li> <li>- 이용대상 : 위기·가정밖청소년(남자)</li> <li>-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li> <li>-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li> <li>- 소요예산 : 624백만원(2022년)</li> </ul>
3147	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중랑구 용마산로 지하227, 723-106호(107호,303호 포함)</li> <li>- 시설규모 : 지하1층 71㎡, 지하3층 58㎡, (총 전용면적 129㎡)</li> <li>- 개관일자 : 2015.04.01.</li> <li>-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li> <li>-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li> <li>- 소요예산 : 238백만원(2022년)</li> </ul>

○ 민간위탁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2021.12.30. 조례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소년시설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청소년 활동시설 1개소(강동청소년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망우단기쉼터, 은평중앙기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기타 청소년시설 2개소(중랑성문화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등 총 6개소임.

※ 재위탁·재계약의 정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새로운 단체 등에 위탁하는 재위탁은 3건, 기존의 운영 단체에게 위탁하는 재계약은 3건이며, 2년간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 성과보고서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 성과지표의 적정성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3항은 민간위탁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과성 평가, 위탁사무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청소년 활동시설과 보호시설은 설치 목적이 상이하어, 시설의 특성별 다른 전문성과 운영방식이 요구되며, 이를 감안하여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동일한 지표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를 도출해냈는지 여부, 추진과정에서 효율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는바,
  - 금번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위탁목적에 부응하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기대한 민간위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추진한 민간위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 활동·보호 등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설별 지표를 달리하거나,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등 청소년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속적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의 평가지표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총점			100	
1. 운영기반 (25점)	1.1. 운영전략 관리 (10점)	1.1.1.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정성	4.00	
		1.1.2. 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4.00	
		1.1.3. 자체평가 및 환류의 적정성	2.00	
	1.2. 조직 및 인력 관리 (12점)	1.2.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00	
		1.2.2. 임용 및 복무관리 적정성	4.00	
		1.2.3. 직원교육 지원의 적극성	2.00	
		1.2.4.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적정성	2.00	
	1.3. 재정 및 자원 관리 (13점)	1.3.1. 회계 관리 적정성	7.00	
		1.3.2. 사업예산 집행 적정성	2.00	
		1.3.3. 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성	2.00	
		1.3.4. 시설 및 안전 관리 적정성	2.00	
	2. 사업운영 (30점)	2.1. 프로그램 개발 (5점)	2.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의 전문성	5.00
		2.2. 사업운영 관리 (15점)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00
2.2.2. 특화전문 활동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00	
2.2.3. 프로그램 질 관리의 체계성			5.00	
2.3. 대외협력 (10점)		2.3.1. 지역 연계협력의 체계성	5.00	
		2.3.2. 홍보 활성화 수준	5.00	
3. 사업성과 (35점)	3.1. 사업운영 실적 (15점)	3.1.1. 청소년 시설이용률	7.50	
		3.1.2.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사업비 수준	7.50	
	3.2.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3.2.1. 성과의 지역사회 확산 노력	5.00	
		3.2.2. 우수한 성과의 창출	5.00	
	3.3. 만족도 관리 (10점)	3.3.1.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4.00	
		3.3.2. 고객만족도 수준	6.00	
가·감점(5점)	A. 가점 : 시정기여도		5.00	
	B. 감점 :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개선		-5.00	

## 2) 위탁사무의 목표 제시

-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수탁단체에게 과도하게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거나, 극히 단순화한 ‘위탁사무’라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포괄적이거나 단순화된 청소년정책이 수탁단체에 구체적 설명없이 전달될 경우 수탁단체의 사무목적이 왜곡될 수 있으며, 시설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을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시설의 운영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정책을 구체화하고, 시설별 사업목표를 제시하여, 시설별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모호한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시설별 명확한 목표설정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민간위탁 기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나.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2020.6.30.)될 예정인 강남구 소재 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시설규모 : 대지 22,650㎡, 건물면적 6,462㎡(지하1층, 지상4-5층)
  - 주요시설 : 상담실, 집단상담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룸학교, 꿈에학교 등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거리상담 등 청소년일시쉼터사업
    -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대안교육 사업
    -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활동 등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
    -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델 정립사업
  - 민간위탁기간 : 3년(2022.7.1.~2025.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2,572백만원(2022년) ※ 민간위탁사업비 606백만원 별도
    - 인건비 1,717백만원, 운영비 563백만원, 사업비 292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청소년이 자립, 교육, 보호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일시쉼터, 성문화센터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지원시설로, 2012년 10월부터 개원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이하 '살레시오회')에 지난 10년간 위탁하여 운영해 왔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2011.12.2. ~ 2015.6.30.(3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공개경쟁
- 2차 2015.7.1. ~ 2017.6.30.(2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재계약
- 3차 2017.7.1. ~ 2020.6.30.(3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공개경쟁
- 4차 2020.7.1. ~ 2022.6.30.(2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재계약

### 〈 위치도 〉



### 〈 2022년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사업 개요 〉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시설사용	시설대관	시설대관
영역별 프로그램 사업	상담사업	법원청소년 상담지원 및 교육, 부모교육 등 19개 사업
	활동자립사업	위기청소년 자립활동 및 자립지원 등 31개 사업
	교육사업	이름학교, 꿈에학교, 검정고시지원 등 25개 사업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	드림캐처 아웃리치, 드림캐처톡톡 등 21개 사업
	성문화센터	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성교육 등 18개 사업
기타사업	홍보사업	드림알리미
특별사업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꿈에학교, 청소년 운영위원회	

출처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2022년 사업계획 중 세부사업계획서(안) 재구성

- 드림센터는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총 31억 7천 8백만원(위탁사업비 6억 6백만원 포함)의 사업비와 44명(일반직 35, 계약직 9)의 인력으로 4개 분야, 8개 사업, 1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통상 드림센터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직업체험, 진로탐색,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역량강화, 사회참여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나,
  - 본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 청소년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센터의 기능 외에 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을 전담하는 성문화센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시쉼터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진로사업을 하는 청소년드림센터,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시쉼터, 청소년 성상담을 전담하는 성문화센터 등 복합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청소년드림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등과 함께 위기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전문성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사무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구성되어 있어,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다만, 실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청소년드림센터의 대안교육기관 운영, 정원관리의 적정성, 지도·점검 시 동일한 분야의 반복적 지적사항 발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본 시설은 청소년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센터, 성문화센터, 일시쉼터의 기능을 포괄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청소년드림센터의 성과평가도 시설 관리·운영 뿐만 아니라 기능통합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 평생교육국은 드림센터, 쉼터, 성문화센터를 각각 평가하고, 이에 대한 연계 효과, 시설통합의 효율성 등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설설치 목적이 ‘통합운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목적사업으로 구분해야 할 사업(쉼터, 성문화센터)을 특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사업성과를 평가한 것이 아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평가하여 실제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사업 결과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누락되었는바, 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기능 통합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탁단체가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성과평가 개요 >**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기간 : 2020년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드림센터) 95점 / (드림일시쉼터) 96점 / (드림성문화센터) 90점

출처 : 의안번호 10- 3143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속서류(성과보고서)

- 둘째, 청소년드림센터는 ‘이룸학교’와 ‘꿈에학교’ 등 2개의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꿈에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이며, ‘이룸학교’는 청소년드림센터의 자체사업으로 보고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 운영은 교육권 보호와 건전한 육성이라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드림센터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특화된 시설로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드림센터가 대안교육기관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대한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꿈에학교’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는 하나, 본 청소년드림센터는 드림센터, 성문화센터, 씬터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교육청의 위탁사무보다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공간을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룸학교’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은 본 시설의 위탁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바, 위탁사무 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드림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시행하기 전에 위탁사무의 변경을 통해 시행규칙의 사업영역과 위탁사무가 일치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사업영역)

⑪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에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활동 및 자립지원
2.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상담
5. 가출청소년을 위한 숙식제공·상담·교육 등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름학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도 아니며,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안학교의 요건(교육감의 인가, 시설·설비기준 등)도 충족하지 못한 대안교육기관으로,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요건도 준수하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룸학교’는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청소년드림센터의 민간 위탁금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서울시 지원금도 수령하고 있음.
-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후 적정규모의 위탁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 민간의 열악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설립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은 그 동안 평생교육국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서울시에서 설립한 대안교육기관이 민간에서 볼 때 대안교육기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이룸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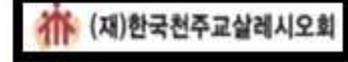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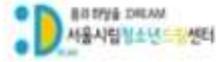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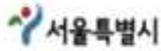
(단위:천원)

	인건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총액
	소계			294,375
2019년	72,000	6,000	13,716	91,716
2020년	-	-	-	86,729
2021년	-	-	-	115,930

출처 :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한편, 이룸학교 입학 안내문에는 서울시와 수탁단체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룸학교의 운영주체가 평생교육국인지 수탁기관인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탁단체의 단체명 사용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청소년드림센터의 ‘이룸학교’ 입학 안내문 〉



### 4 이룸학교 운영

- 운영재단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운영기관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학교형태 : 도시형 대안학교(비인가)
- 입학대상 : 14세 ~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경제, 가정,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우선 선발)

출처 : 2020년 2학기 이룸학교 입학안내문 3페이지 일부 발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은 청소년드림센터의 복합적 기능을 감안하여 ‘기타청소년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은 직업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운영지침을 통해 청소년 수련관·특화시설 등을 모두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 청소년드림센터는 진로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보호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모든 종류(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 규정을 모두 적용받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시설로 오인·착각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게 고유 명칭 사용을 강제하고, 위탁단체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탁단체 명칭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 청소년드림센터의 수탁기관은 각종 문서 및 공고문에 수탁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기청소년의 오인 및 착각, 시립시설이 ‘수탁단체의 부속시설’로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명칭 사용에 대해 평생교육국과 수탁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의 ‘청소년특화시설’ >**

마. 청소년특화시설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u>직업체험</u> ,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중 ‘마. 청소년특화시설’ 일부 발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개념 정의 >**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함
- 200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됨

출처 : 202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2021.12.) 1p 발췌

〈 청소년시설의 고유명칭 강제 및 수탁법인명칭 사용금지 〉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에 시설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 사용
- 시설명칭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에 위탁 단체명칭 사용 금지

출처 : 202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2021.12.) 19p 발췌

- 셋째, 청소년드림센터의 정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을 25명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 청소년드림센터에서 작성한 문서 또는 청소년드림센터에서 제출한 문서를 기초로 한 평가에서는 청소년드림센터의 정원을 36명으로 기재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정원 기준 〉

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기능	고용
25	23	1	1	1	3	4	13	-	2	1	1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청소년시설별·직급별 정원 범위(제7조 관련)

〈 2020년 기준 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정원 〉

1.2.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정원 36명**, 현원 50명(일반직 50명, 계약직 10명)(드림일시청소년센터 정원 6명, 현원 6명 및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정원 5명, 현원 5명 포함)으로 운영하고 있음.

출처 : 의안번호 10- 3143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속서류(성과보고서) 일부 발췌

- 청소년드림센터 설립계획 시(2011년) 당시 담당부서(여성가족정책관)는 드림센터 성문화센터, 쉼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인력을 12명으로 구성 후, 운영결과에 따라 2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증원을 통해 현재 청소년드림센터의 정원은 25명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 청소년드림센터의 수탁단체는 드림센터 인력(25명) 외에 쉼터 6명, 성문화센터 5명을 더하여 36명을 정원으로 표시하고 있어, 평생교육국과 청소년드림센터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2011년 설립당시 청소년드림센터의 공간배치 〉

2 설치 개요

○ 위치 : (구)서울의료원 (강남구 삼성동)

○ 규모 : 총 6,462㎡

구분	면적(㎡)	주요 공간 배치
5층	2,641	성문화체험관, 진로상담실, 쉼터(Drop-in)-여자, 동아리, 프로그램실, 교육공간2 등
4층	2,641	인터넷중독 등 치료.상담실, 활동체험공간, 창작작업장, 쉼터(Drop-in)-남자, 교육공간1, 안나
지하1층	1,180	댄스.음악연습실, 카페테리아 등

출처 : 서울시 청소년드림센터 설치 운영계획(2011.8.18.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111935) 3p 발췌

〈 2011년 설립당시 청소년드림센터의 조직구성 〉

□ 조직 및 운영

○ 조직구성 : 4개팀 14명 (상담치료, 교육훈련, 활동진로, 보호지원)



※ 2012년 14명으로 운영 → 운영결과에 따라 20명까지 정원 확대 검토

출처 : 서울시 청소년드림센터 설치 운영계획(2011.8.18.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111935) 3p 발췌

- 청소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국과 수탁기관 간 의사소통 및 사업 계획의 치밀한 지도·점검 등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그 동안 과도한 인력운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건비의 지출 등은 없었는지, 적절한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지, 세심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드림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 적절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청소년드림센터의 수탁기관은 10년간 위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시 동종·유사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시 시설의 관리·운영의 역량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청소년드림센터 지도·점검 결과 〉

일 시	지적사항
2021.4.26. (드림센터)	재물조사 결과 스티커 미부착, 물품에 대한 고유코드를 수기관리, 계약직원 필수교육 참여 미흡, 수의계약 내역 미공고, 수의계약사유서 미첨부 및 가격산출 내역 미비
2021.04.23. (썬터).	총계정 원장 지출액과 세출총액 상이, 지출 증빙 및 지출 결의서 기한 준수 미흡, 업무추진비 진행 미흡, 강사료 지급시 개인정보 동의서 미징구
2021.4.5. (성문화)	홍보물품 수불대장 관리 미흡, 채용공고 포털사이트 게시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지출결의서 기한 준수 미흡, 직원 생일선물 수령대장 누락, 강사채용 사업계획 미수립, 강사 채용시 적정 증빙서류 미흡
2020.12.21. (썬터)	신용카드 포인트 미반납, 수입금 내역 미공개 등 세입세출결산서 등 공개 업무 부적정
2020.8.28. (드림센터)	10만원 이상 상당치료비 관련 현금영수증 미발급, 공용차량 관리 미흡, 세출 예산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미반납, 결산 공고 시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등의 내역 미포함, 물품 구매 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구매,
2019.11.29. (썬터).	홍보물품관리 미흡, 물품담당자 미지정 등 책임관리 미흡
2019.7.26. (썬터)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전력조회 미실시
2019.9.20. (드림센터)	물품구매 종료 후 검수조서 작성시 검수자 및 확인자 기명날인 누락, 물품관리자 및 시설관리자 별도지정 필요, 의자, 선풍기 등 자산으로 등재관리 해야 할 물품을 비품성 소모품으로 관리, 보조금통장의 입출금정리 누락, 기념품제작 및 지급 시 수령인에 대한 정보기재 누락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43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6. 30.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최초 위기개입 상담서비스에서부터 자립·자활까지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거리상담 등 청소년일시쉼터사업
-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대안교육 사업
-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활동 등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
-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델 정립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시설규모 : 대지 22,650㎡, 건물면적 6,462㎡(지하1층, 지상4-5층)
- 주요시설 : 상담실, 집단상담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청소년 일시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룸학교, 꿈에학교 등
- 위치도



라. 민간위탁기간: 3년(2022. 7. 1. ~ 2025. 6. 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72백만원('22년) ※ 민간위탁사업비 606백만원 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1,717백만원, 운영비 563백만원, 사업비 29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li><li>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li></ul> |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li><li>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li></ul>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감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li></ul>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
|--|
| <p>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li></ol> |
|--|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이승연 (☎ 2133-4133)